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

(이태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53 발의년월일 : 2022. 11. 18. 발 의 의 워 : 이태손, 하병문

> 윤권근, 이성오 김태우, 이재숙 김재용, 손한국 윤영애, 육정미

의원(10명)

1. 제정 이유

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, 예산편성,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나. 자금지원 방식, 자금지원 대상, 지원계획 공고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- 다. 자금신청, 자금지원결정 등,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, 자금승인 통보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- 라. 변경신고 및 승인, 사후관리(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)
- 마. 자금의 환수조치 등,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(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)

3. 참고 사항

가. 조례안 : 붙임

나. 관계법령: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은행법」 등

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 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- 2. "중소기업육성자금"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설비 구입, 건축비, 공장(부지)매입비, 임차비등에 관련된 소요자금을 말한다.
- 3. "금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
 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라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- 제3조(예산편성)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매년 자금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.
- 제4조(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)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및 재단법인 대구신용보증재단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- 제5조(자금지원 방식) ① 시장은 원활한 자금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라 약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한다.
 - ②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여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한다.
- 제6조(자금지원 대상)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
 - 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 중 제조업
 - 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
 - 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창출 산업
 - 5. 「영상진흥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
 - 6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
 - 7.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 - ② 기타 지원대상업종, 지원대상사업, 지원기간,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7조(지원계획 공고) 시장은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금별 지원대상, 지원한도, 지원조건, 신청절차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자금신청) 제6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자금지원결정 등)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구체적 인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- 제10조(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- 제11조(자금승인통보) 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자금지원을 결정 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취급금융기관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업이 대출실행기한 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미실행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.
- 제12조(변경신고 및 승인) 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금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상호
 - 2. 공장소재지
 - 3. 대표자 성명(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)
 - 4.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
 - 5. 개인기업의 법인전환, 기업분할, 기업합병
 - 6. 주생산업종의 변경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승인할 때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후관리) 시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평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제14조(자금의 환수조치 등) 자금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
 - 2.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
 - 3.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장의 휴업·폐업 또는 타 시·도 이전 시
- 제15조(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)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.
- 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 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제6조 관련)

한국표준산업	분 류 명
분류코드	上 II O
381	폐기물 수집운반업
382	폐기물 처리업
493	도로 화물 운송업
501	해상 운송업
521	보관 및 창고업
52913	물류 터미널 운영업
52941	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
52942	수상 화물 취급업
52991	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
52992	화물 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
52993	화물포장,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
76390	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
74212	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

※ 통계청 고시(2017-13호) 한국표준산업분류

관계 법 령

□ 중소기업기본법

-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4. 1. 14., 2015. 2. 3., 2016. 1. 27., 2018. 8. 14., 2019. 12. 10., 2020. 10. 20., 2020. 12. 8., 2020. 12. 29.>
 -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-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 -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-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-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-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 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□ 은행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8. 13., 2015. 7. 24., 2021. 4. 20.>

- 1. "은행업"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 는 것을 말한다.
- 2. "은행"이란 은행업을 규칙적·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.
- 3. "상업금융업무"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.
- 4. "장기금융업무"란 자본금·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,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(社債)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.
- 5. "자기자본"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하다.
- 6. "지급보증"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신용공여"란 대출,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(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),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·간접적 거래를 말한다.
- 8. "동일인"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"특수 관계인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- 9. "비금융주력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인 자의 자본총액(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
 - 나.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
 - 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(이하 "투자회사"라한다)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(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
 - 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(이하 "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

- 1)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(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)
- 2)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[다만,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(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]
- 3)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(「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
- 마.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·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
- 10. "대주주(大株主)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[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(이하 "지방은행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15]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
 - 나.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(지방은행은 제외한다)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(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(任免)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
-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.[전문개정 2010. 5. 17.]

□ 한국산업은행법

제2조(성격 등)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.

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(定款)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은행법」과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. 다만, 「은행법」 제8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8조의2, 제30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제3호, 제32조, 제35조, 제37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제1호, 제40조,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·제7호·제9호, 제48조, 제50조, 제53조, 제54조, 제54조의2,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,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6호·제8호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2호, 제19조, 제20조,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 7. 31.>

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 행에 적용한다.

□ 중소기업은행법

-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중소기업자"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(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 - ②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.[전문개정 2010. 3. 12.]

제3조(법인격)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.

-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-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은행법」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 7. 31.>[전문개정 2010. 3. 12.]

□ 농업협동조합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조합"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.
- 2. "지역조합"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.
- 3. "품목조합"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·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.
- 4. "중앙회"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.[전문개정 2009. 6. 9.]

- 제3조(명칭)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,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 동조합의 명칭을,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31.>
 - 1.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
 - 2.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[전문개정 2009. 6. 9.]
- 제4조(법인격 등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.
 -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.[전문개정 2009. 6. 9.]